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15
----------	------

2014년 3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2월 10일, 주영길 의원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14년 2월 17일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2월 2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영길 의원)

### 가. 제안 이유

행정환경은 날로 복잡·다양화되고, 행정서비스 수요 또한 질적·양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행정기관간 또는 기관 내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임.

따라서 기관간 또는 기관 내부의 협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통해 높은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절차 개선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

이는 것도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의상 운영조례」를 근거로 ‘서울창업의상’에 ‘상생협력’부문을 신설하여 협업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강화해 나가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1)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업의상의 종류에 ‘상생협력’ 부문 신설 및 ‘혁신시책’부문 용어 개정함(안 제3조).
- 2) 서울창업의상 및 서울창업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협력성’ 신설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행정의 특성상 안정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관간 또는 기관내부간의 기능적인 융합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현재 집행부의 업무실적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주관부서에 실적인정이 집중됨에 따라 공동 협력자에 형평성 있는 실적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음.
- ※ 집행부가 제출한 심야전용 시내버스 운영사업의 경우를 보면 ‘버스정책과’와 ‘정보시스템담당관’이 협력하여 KT통화량데이터와 서울시의 교통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동화집중지역을 감안한 심야버스 노선을 완성한 바 있음. 그러나 주관부서인 버스정책과에만 인센티브(서울창의상 혁신시책 최우수(2013.7))가 부여되었고 협조부서인 정보화시스템담당관에게는 혜택이 부여되지 못하였음.
- 검토하건데 광역행정 수요가 날로 복잡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산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시행정이 IT 등을 중심으로 융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개의 부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안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음.
- 무엇보다 서울이 주요 세계도시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또는 기관 내부간 공동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 또한 크다고 하겠음.
- 그러나 서울창의상제도와 같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함으로써 주관부서 위주의 평가는 각 실국 중심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집행부의 경쟁력은 담보상태에 머물 수 있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음.
- 그러한 의미에서 개정안은 업무협력을 통한 사업 성과를 제고할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인사고과 반영, 포상 등 실질적인 보상 제공을 통해 조직 칸막이를 해소함으로써 협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하겠음.

## 나. 심사기준 관련(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u>경제성</u>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 ----- ----- ----- ----- <u>경제성, 협력성</u>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서울창의상 수여를 위한 심사기준에 있어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외에 협력성을 추가하였음.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명시된 바와 기관간 또는 기관 내부간 협력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업을 통해 높은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 다만, 서울창의상 심사 및 수여에 있어서 계량화되지 못한 심사기준 등에 의한 주관적인 시상이 될 소지와 인위적으로 부서를 조정하여 나눠먹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심사기준의 마련 및 합리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4호를 5호로, 5호를 6호로 하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혁신시책부문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연2회)
4. 상생협력부문 : 업무분야에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
5. 예산절감부문
6. 지식경영부문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협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 서울 창의상 포상금(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개 정 안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민	창의제안		5,000	3,000	2,000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서울창의대상		10,000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혁신시책		5,000	3,000	2,000
	상생협력		5,000	3,000	2,000
	지식 경영	학습 동아리	3,000	2,000	1,000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공무원직접 수행학술용역					
시 공무원	서울창의대상		10,000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제2조 2호의 “채택제안”의 경우 200,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1. 창의제안부문 2. 창의실행부문 3. 혁신시책부문 : <u>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일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업무효율을 높인 공무원</u>	③ 1. 창의제안부문 2. 창의실행부문 3. 혁신시책부문 : <u>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연2회)</u>
<신설>	4. <u>상생협력부문 : 업무분야에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u>
4. 예산절감부문 5. 지식경영부문	5. 예산절감부문 6. 지식경영부문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u>경제성등을</u>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 -----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u>경제성, 협력성 등을</u>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붙임>	별표 <붙임>

[별 표]

## 서울 창의상 포상금(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현행					개정안						
수상대상	부문별	포상금			수상대상	부문별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시민	창의제안	5,000	3,000	2,000	시민	창의제안	5,000	3,000	2,000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서울창의대상	10,000				서울창의대상	10,000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 기관 직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 관 직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혁신시책	5,000	3,000	2,000		혁신시책	5,000	3,000	2,000		
	지식 경영	학습 동아리	3,000	2,000		1,000	지식 경영	학습 동아리	3,000	2,000	1,000
		시정연구 논문	3,000	2,000		1,000		시정연구 논문	3,000	2,000	1,000
		공무원직접 수행학술 용역						공무원직접 수행학술 용역			
	서울창의대상	10,000				서울창의대상	10,000				
시 공무원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시 공무원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제2조 2호의 “채택제안”의 경우 200,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